

# 대의원 선출규정

【항공회 규정 제2-5호】

제정 2019년 3월 18일

## 제 1조 【목적】

이 규정은 정관 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회의 구성원이 될 대의원의 정수, 대의원 입후보자의 자격 및 선출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2조 【적용범위】

대의원 선출에 관하여는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제 3조 【대의원의 구성】

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대의원(부회장, 이사)과 정관 제23조 및 제24조에 의거 선출된 선출직 대의원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로 한다.

## 제 4조 【선출직 대의원의 정수】

- ① 대의원의 선출은 정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절차를 이행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대의원은 전년도 12월 말일 현재의 가맹단체 및 분과위원회의 재직 회원수를 기준하여 선출한다.
- ③ 가맹단체에서는 항공회에 등록한 유효회원 5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최대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. 또한, 등록된 유효회원이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대의원을 1명만 선출할 수 있다.
- ④ 분과위원회별 개인회원은 항공회에 등록된 유효한 회원 20명당 1명으로 제한하며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.

## 제 5조 【선거권과 피선거권】

-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원의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의 기준은 총회 공

고일을 기준으로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협회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면직한 자는 면직 후 3년 이내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선출직 직위에 입후보할 수 없다.

## 제 6조 【선출직 대의원의 선출】

- ① 선출직 대의원은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 20일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. 단, 차기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총회 40일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.
- ② 선출직 대의원은 대의원 선출 공고일 현재 본회 정회원으로 회비미납이 없는 회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.

## 제 7조 【선출방법】

- ① 가맹단체는 가맹단체 규정에 의하여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가맹단체에 항공회 대의원 선출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른다.
- ② 선출하는 연도의 정기총회가 기한 내에 개최되지 못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서 선출할 수 없을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선출한다. 이 경우 종전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대의원 선출시까지 자동 연장된다.
- ③ 분과별 개인회원 중 대의원에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항공회 사무처에 보고한다.
1. 대의원신청서 (별지 제2호 서식) 1부
2. 대의원 추천서 (별지 제3호 서식) 1부
- ④ 개인회원의 대의원 추천은 1인의 후보자에 한하고, 복수 (중복)추천할 수 없으며 추천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.
- ⑤ 제3항 제2호의 대의원 신청자가 받아야 하는 회원의 추천은 20인에 한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다.
- ⑥ 사무처는 대의원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

## 제 8조 【대의원의 확정】

- ① 가맹단체에서 선발된 대의원은 항공회에 선임된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.
- ② 분과별 개인회원은 항공회에 등록된 분과별 유효회원 20명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대의원신청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.
- ③ 회장은 선출직 대의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출직 대의원 자격을 무효로 할 수 있다.

- ④ 회장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을 확정하고 총회 공고일 10일 전에 그 명단을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 공고하여야 한다. 단, 차기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일 30일전까지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제 9조 【자격상실】

대의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자격이 상실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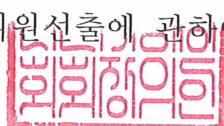
- ① 정관 제13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탈퇴했을 때
- ② 선출직 대의원이 자의에 의하여 사임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
- ③ 가맹단체 규정에 의하여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할 때

### 제 10조 【선출직 대의원의 보선】

선출직 대의원의 결원에 대한 보선은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제 11조 【규정의 적용】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의원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.



## 부 칙

### 제 1조 【시행일】

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선출직 대의원 명단 통보서

| 명칭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
| 선 출 대 의 원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성 명       | 주민등록번호 | 기술범위 | 직장 및 직위 | 전화번호 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|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  |

(사)대한민국항공회의 정관 제 조 제 항 및 대의원선출규정에 의하여 제 대 선출직 대의원을 상기와 같이 선출하여 통보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선거관리위원장 (인)

(사)대한민국항공회 회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## (사)대한민국항공회 대의원 등록서

| 순번 | 성명 | 생년월일 | 소속 | 직위 |
|----|----|------|----|----|
| 1  |    |      |    |    |
| 2  |    |      |    |    |
| 3  |    |      |    |    |
| 4  |    |      |    |    |
| 5  |    |      |    |    |
| 6  |    |      |    |    |
| 7  |    |      |    |    |
| 8  |    |      |    |    |
| 9  |    |      |    |    |
| 10 |    |      |    |    |

※관련근거 : 제24조(대의원의 수)

- ① 가맹단체에서는 항공회에 등록한 유효회원 50명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 한다. 단, 등록된 유효회원이 50명 미만인 가맹단체는 대의원을 1명만 선출 할 수 있다.
- ② 개인회원은 항공회에 등록된 유효한 회원 20명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.
- ③ 종목별 대의원수는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④ 각 가맹단체는 소속 유효회원의 명부를 매 분기 종료 후 2주일 이내에 항공회에 제출해야 한다.

상기인을 20 년도 (사)대한민국항공회 대의원으로 등록합니다.

201 년 월 일

협회 회장 (인)

## (사)대한민국항공회 회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## 대의원 신청서

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회원번호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성명          |      | 성별                 | 남 / 여       |
| 생년월일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주 소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
| 연<br>락<br>처 | 휴대전화 | 항공회<br><u>확인사항</u> | 회원가입<br>연월일 |
|             | 자 택  |                    | 회원부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유 / 무       |

상기 본인은 정관 제23조 1항 및 제24조 2항에 의거하여 (사)대한민국항공회  
종목 대의원을 신청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인)

<별첨> 대의원 추천서

(사)대한민국항공회 회장 귀하

[별지 제4호서식]

## 대의원 추천서

○ 피추천인 : (생년월일 : )

정관 제23조 1항 및 제24조 2항에 의거하여 위 개인회원을 (사)대한민국 항공회 \_\_\_\_\_ 종목 대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.

| 연번 | 성명 | 성별 | 생년월일 | 연락처 | 회원번호 | 서명 |
|----|----|----|------|-----|------|----|
| 1  |    |    |      |     |      |    |
| 2  |    |    |      |     |      |    |
| 3  |    |    |      |     |      |    |
| 4  |    |    |      |     |      |    |
| 5  |    |    |      |     |      |    |
| 6  |    |    |      |     |      |    |
| 7  |    |    |      |     |      |    |
| 8  |    |    |      |     |      |    |
| 9  |    |    |      |     |      |    |
| 10 |    |    |      |     |      |    |
| 11 |    |    |      |     |      |    |
| 12 |    |    |      |     |      |    |
| 13 |    |    |      |     |      |    |
| 14 |    |    |      |     |      |    |
| 15 |    |    |      |     |      |    |
| 16 |    |    |      |     |      |    |
| 17 |    |    |      |     |      |    |
| 18 |    |    |      |     |      |    |
| 19 |    |    |      |     |      |    |
| 20 |    |    |      |     |      |    |

(사)대한민국항공회 회장 귀하